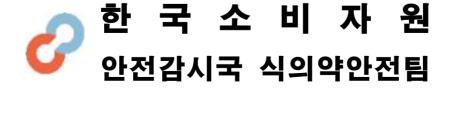
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

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

2020. 12.



■ 목 차 ■

Ι.	조사개요	· 1
п.	일반현황	· 4
Ш.	조사결과	16
IV.	문제점 및 개선방안	23
V.	조치계획	25

1. 조사배경 및 목적

- □ '17년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으로 폐의약품은 '생활계 유해폐기물' 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관리・ 처리 절차가 상이한 실정임.
 - 현재 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83곳만이 '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'를 제정한 상황('20.11.26.기준)으로 폐의약품 수거·처리 절차가 지역별로 다르고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리도록 하는 곳도 있음¹⁾.
 - 캐나다·프랑스·호주는 약국에서 수거 후 도매업체 등에서 회수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, 미국에서는 약국수거 · 우편반환 · 지정일 수거 캠페인 등 다양한 수거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.
- □ 가정에서 하수구 등을 통해 버려진 폐의약품은 수중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으며, 종량제봉투를 통해 폐기되더라도 매립되는 경우 토양을 오염시켜 내분비계 교란, 항생물질 내성균 등으로 인해 생태계와 공중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'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, 미복용의약품을 '쓰레기통·하수구·변기에 처리(55.2%)'한 비율이 '약국·보건소에 반환(8.0%)'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, 종량제봉투에 의해 배출되는 폐기물 중 59.3%가 소각, 31.5%는 매립되는 것으로 확인됨.
- □ 실제로 국내에서 하천 등 지표수,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조사한 결과 해열진통제·항생제·동물용 의약품 등 다수의 의약물질 성분이 검출된 바 있음.

^{1) &}quot;폐의약품, 여기선 약국소거...저기선 종량제봉투에", 데일리팜 (2019.9.17.)

【 국내 하천 중 의약물질 성분 검출 사례 】

연구기관	'16. 국립환경과학원	'09. 국립환경과학원	'08. 대한약사회
조사장소	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, 학교, 목장 인근 A하천	4대강(한강, 낙동강, 금강, 영산강) 하천	한강 하천
조사결과	조사대상 의약물질 25개 중 15개 성분 검출	조사대상 의약물질 30개 중 16개 성분 검출	조사대상 의약물질 12개 중 11개 성분 검출

□ 이에 우리 원에서는 폐의약품의 수거·처리·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은 제도개선에 반영 함으로써 소비자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※ 본 과제는 '안전실태조사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전'에 응모된 건임.

2. 조사내용 및 방법

조사내용	조사방법
• 약국 및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 현황	실태조사
• 지방자치단체별「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세부사항	자료조사
• 국내외 기준·규격 및 안전정보 수집	МПТТМ

3. 조사대상

- □ 서울특별시·경기도 기초자치단체(구·시) 12곳* 내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
- 기초자치단체 별 약국 10개소 및 보건소 1개소
 - * 서울특별시·경기도 내 약국분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중 「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와 미제정한 기초자치단체 각 3곳씩 선정

4. 조사기간

□ 조사기간 : 2020. 7. ~ 10.(4개월)

□ 조 사 자 : 신지황 대리(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)

Ⅱ 일반현황

1. 정의 및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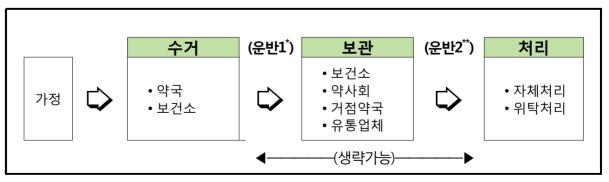
가. 개요

- □ (정의)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·변질·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함.
 -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'불용의약품' 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의약품이 '폐의약품'임.
 -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*로 분류되어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.
 - *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·신체 손상 등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, 폐형광등, 수은함유폐기물, 폐의약품 등이 해당

나. 페의약품 수거·처리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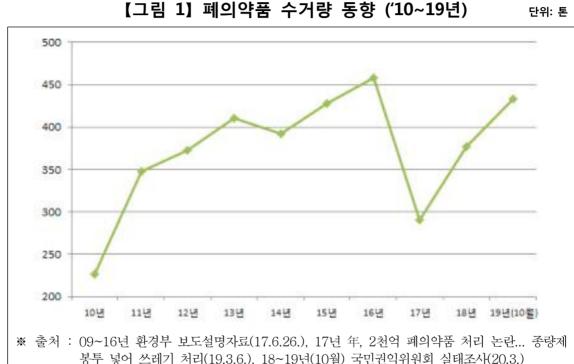
 □ (수거・처리체계) 가정에서 약국 등으로 수거된 폐의약품은 지정 장소로 운반 및 보관 후 소각처리가 되며, 2015년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 개정 이후에는 운반・보관 절차 없이 바로 소각처리도 가능함.

【표 1】 폐의약품 수거·처리 절차



운반1* 주체 약국, 약사회, 보건소, 도매상, 지자체 등 **운반2** 주체** 지자체, 보건소, 수집운반업체 등

- 페의약품 운반 및 보관 주체는 약국, 약사회, 보건소, 지자체, 제약회사, 의약품 유통업체 등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하며,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2)
- □ (수거현황) 2019.10.기준 폐의약품 수거량은 433,480kg이며 2010년부터 증가하다 중반 이후에는 주춤하는 추세임.



- 2009년 '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·처리 시범사업'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「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」 개정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리도록 아내하면서 수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3).
- ☐ (처리현황) 약국·보건소 등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량 소각되나, 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질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되어 매립되는 경우도 있음.

^{2) &}quot;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"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(18.10.31.)

^{3) &}quot;年 2천억 폐의약품 처리 논란…종량제봉투 넣어 쓰레기 처리", 매일경제 (19.3.6.)

- 2018년 기준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생활계 폐기물의 일 발생량은 20,361톤으로 이 중 12,163톤(59.3%)은 소각되고 4,008톤(31.5%)은 매립되고 있음⁴⁾.
 - 따라서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종량제봉투를 통해 배출하는 경우 일부는 매립되어 폐의약품 성분이 침출수를 통해 토양환경으로 직접 유입되거나 지하수를 통해 수계(水界)환경에 유입될 수 있음.

다. 폐의약품으로 인한 영향

- □ (환경오염) 폐의약품이 버려질 경우 토양・수질오염이 발생해 생태계 교란과 지속적인 항생물질 노출로 다제내성균*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.
 - * 다양한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병균, 슈퍼박테리아를 의미하기도 함.
 - 의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(17 α-Ethylnylestradiol)이 호수에 장기간・저농도로 노출된 후 물고기의 정상적인 번식이 일어나지 않아 멸종, 소염제(Diclofenac) 노출로 서남아시아 독수리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, 항불안제(Oxazepam)의 도시 하천 오염으로 어류 행동변화를 초래한 결과⁵⁾등 오염된 의약물질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.
- □ (약화사고)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을 개인의 판단만으로 복용할 시오・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약봉투 및 설명서를 폐기한 경우 약물특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힘들어 복용 시 약화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.
 -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화학물질의 변질로 인해 이를 복용하는 환자,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⁶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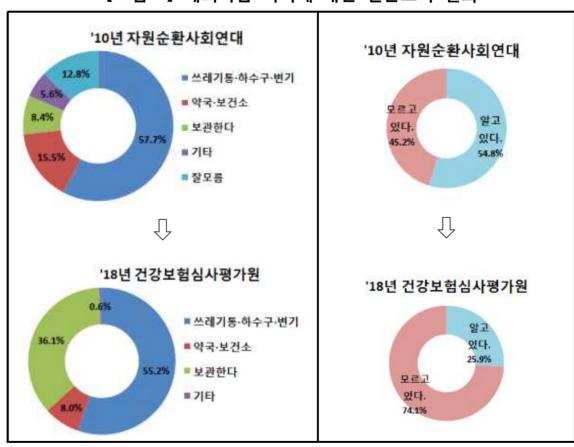
⁴⁾ 자원순환정보시스템(www.recycling-info.or.kr)

^{5) &}quot;위해우려 의약물질의 생태위해성평가" 국립환경과학원(2016.12.)

⁶⁾ McCauley et al (2013)

라. 폐의약품에 대한 국민 인식

- □ 2018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설문결과⁷⁾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'쓰레기통·하수구·변기에 처리'하는 비율(55.2%)은 '약국·보건소 등에 반환'하는 비율(8.0%) 보다 훨씬 높았음.
 - 또한 불용의약품의 처리방법을 '알고 있는' 비율은 25.9%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(74.1%)은 잘 모르고 있어 수거율을 높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.



【그림 2】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
- 2010년 유사한 선행 설문결과⁸⁾와 비교해 보았을 때 폐의약품의 처리에 대한 인식·실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.

^{7) &}quot;낭비되는 의약품 규모,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: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의약품 중심으로"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18.12.)

^{8) &}quot;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·처리 사업", 자원순환사회연대 (2010.12.)

2. 국내제도

가. 국내 법령 및 조례

□ (「폐기물관리법」)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건강·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'생활계 유해폐기물'로 정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(제14조 4)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동법 시행규칙14조[별표5]).

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4

-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"생활계 유해폐기물"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・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 - 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 - 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 - 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**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**을 포함한다)
-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,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·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**환경부령**으로 정한다.
- 또한 환경부에서 제정한「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」에서 폐의약품 배출수거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음.
 - 동 지침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나 안내문 게시 등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해야하며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약국,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.

「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」

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적용

- **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**하되 **약국, 보건소**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
 -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내 폐의약품 수거·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,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 수료 부과·징수
-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, 보건소·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**안내문 게시** 또는 **안내표지판 부착** 등 유도
 -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, 보건소·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**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**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관리

- 지자체 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
 - 지자체 홈페이지, 전광판,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**가정내 폐의약품 배 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**
 - 지역별 관련단체(지역 약사회 등) 등과 협의를 통해 "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"을 지정하여 집중 수거 실시(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) (예시) "매월 셋째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"로 지정
-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**월 1회 이상 수집**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**약국,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**. 다만,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,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주기 조정 가능
- 지자체 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 - 그러나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폐의약품의 관리현황 및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.

[붙임 1]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 보고

- 1.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일반현황
- ㅇ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구역 현황
- 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현황
- ㅇ 분리수거 실시 여부
- ※ 해당 시.군.구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 여부를 ○, ×로 표시
- ㅇ 수거 방법
- ㅇ 수거 주기
- 3.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량
- □ (조례) 현재 폐의약품 수거・처리 관리는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는 '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'를 제정하고 수거함 설치・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・수거장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・수거 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 -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83곳(36.4%)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조례 내용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도 많아 '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선 권고⁹한 바 있음.

「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
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파주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·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, 수집, 운반,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민의 책무) ① 시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,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 - 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,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 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 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.
 -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원활한 폐의약품의 회수업무 및 수집된 폐의약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시에 협조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,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6조(포상)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
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에서 홍보물을 제작, 배포할 수 있다
 -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, 수집, 운반, 처리의 관리체계 및 예산을 마련하고,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구민의 책무) ① 구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 야 한다.
 -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 필요시 구,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,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·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**안전하게 회수·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**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강서구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
- 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**정기적**으로 처리한다. 제7조(포상)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^{9)「}가정 배출 페의약품 수거ㆍ처리 등 관리 개선」의결, 국민권익위원회 (2020.3.)

나. 제도개선 연혁

- □ 2008년부터 '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·처리사업(2008~2012)'을 단계 별로 추진함.
 - ('08년) 환경부 주관 하에 '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·처리 시범사업'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 시행
 - ('09년) 민·관협약^{*}을 통해 '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·처리 시범사업'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 시도
 - * 환경부, 보건복지가족부, 대한약사회, 한국의약품도매협회, 한국환경자원공사, 자원순환사회연대, 동아제약
- □ ('10년)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에서 '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'을 신설하여 폐의약품을 약국 또는 보건소를 통해 수거하고 안내문 게시,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등으로 홍보하도록 함.
 - ('12년) 동 시행지침 개정으로 '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'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과 월 1회 이상 소각처리 하되 협의를 통해 처리주기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음. 또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지자체 소각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소각시설을 이용하도록 함.
 - ('15년) 동 시행지침 개정으로 바로 소각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약국,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함.
- □ ('17년)「폐기물관리법」개정으로 '생활계 유해폐기물' 분류를 신설해 폐의약품을 포함시키고 지자체장이 이에 관한 처리계획 및 평가를 하도록 함.
 - 법 개정에 따라 폐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「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」 으로 이관되었으며 폐의약품은 폐농약, 폐형광등, 수은함유폐기물과 함께 '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'로 분류되어 소각처리 하도록 함.

○ 그러나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홍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 및 지역 약사회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으며, 운반・ 보관・처리 등의 주체가 불분명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.

3. 해외제도

가. 유럽연합10

□ 2001년 「인체용 의약품 관련 지침¹¹⁾」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 주의사항을 외부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, 회원국은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적절한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[표 2] EU「인체용 의약품 관련 지침」중 폐의약품 관련 조항

지침	조항	내용
	Article 11	- (6.6.) 불용의약품 또는 의약물질에서 유래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주의사항(해당되는 경우)
2004 /27/EC	Article 54	- 제품 특성 요약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. (j) 불용의약품 또는 의약물질에서 유래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주의사항 및 적절한 수집 시스템에 대한 참조
	Article 127b	- 회원국은 불용의약품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에 대하여 적절한 수거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.

^{10) &}quot;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페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"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(18.10.31.)

¹¹⁾ EU 「Directive 2004/27/EC」

나. 프랑스

- □ 2007년부터 약국의 폐의약품 회수가 의무화되었고¹²⁾ 2009년 공중 보건법¹³⁾에 회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.
 - 'Cyclamed'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이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10명 중 8명이 폐의약품을 약국에 반환하고 있으며, 2018년 10,675톤의 폐의약품이 수거되어 인당 평균 159g을 반환함¹⁴⁾.
 - ※ 국내는 같은 연도 376톤이 수거, 인당 평균 7.3g 꼴로 폐의약품을 반환해 큰 차이를 보임
 - Cyclamed는 대형제약회사인 'Sanofi'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2016년 기준 1,800만 유로의 지원이 이루어졌음.





¹²⁾ Law No. 2007-248, Article 32, OJ of 2/2/2007

^{13) 「}Code de la santé publique」 Article L4211-2

¹⁴⁾ Cyclamed 홈페이지(www.cyclamed.org/)

다. 미국

- □ 2010년 「폐의약품 배출 관련 법¹⁵」을 통해 약국과 DEA(마약단속국, U.S.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)에 불용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.
- DEA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의약품 수거 지정일(Take-Back Day) 을 알리고 자신의 주소를 입력 시 주변 수거장소 위치를 안내해 지정일에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.
- 또한 약국・병원 및 법무시설 등이 수거지점으로 지정되어 수시로 반환이 가능하며 수거지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을 통해 반환하는 프로그램(mail-back)도 있음.

수거일 안내 수거장소 안내 Mail-back 프로그램 안내 National Take Back Initiative Collection(s) Site Search Result Saturday, October 24, 2020 10:00 am - 2:00 pm RID YOUR HOME OF POTENTIALLY DANGEROUS : UNUSED MEDICATIONS! Search Again DEA NATIONAL & Take Back Day: Saturday, October 24, 2020 10:00 am - 2:00 pm BURBANK POLICE DEPARTMENT BURBANK POLICE STATION The Next Take Back Day Is In: Мар O Days, 19 Hours, 43 Minutes, 19 Second Man On October 24, 2020 at 10:00 AM EL SEGUNDO POLICE DEPT. EL SEGUNDO CITY YARO PARKONO LOT LOS ANGELES PD*
CVS, VAN NUVS
SAN FERN VAL PART DIR ALBERT MELENA (810) 14miles. Map If you do not find a collection site near you, please check back frequently, new sites are added every day.

【그림 4】미국의 폐의약품 수거 관련 안내

¹⁵⁾ Secure and Responsible Drug Disposal Act

라. 캐나다

- □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 주 법령¹⁶⁾에 따라 생산자 책임제 폐의약품 수거 제도를 운영 중임.
- 회수 프로그램 'Medication Return Program'은 비영리단체 HPSA (Health Products stewardship Association)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음.



【그림 5】 캐나다 폐의약품 수거함

^{16) 4}개 주 (BC, MB, ON, PE)가 회수프로그램(MRP)를 시행중이며 가장먼저 시행한 주인 British Columbia주는 B.C. Reg.449./2004, 「Environmental Management Act Recycling Regulation」를 근거로 함.

Ⅲ 조사결과

■ 조사대상

- o 서울특별시·경기도 기초자치단체(구·시) 12곳* 내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
 - 지자체 별 각 약국 10개소 및 보건소 1개소
 - * 서울특별시·경기도 내 약국분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중 「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각 3곳씩 선정

서울특	특별시	경기	· -
불용의약품 조례 有	불용의약품 조례 無	불용의약품 조례 有	불용의약품 조례 無
송파구	강남구	성남시	수원시
강서구	영등포구	안양시	고양시
강동구	관악구	남양주시	부천시

o 전국 각 지자체가 제정한 「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(83개)

■ 조사내용

- ㅇ 약국 및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 현황
 - 폐의약품 수거 여부
 -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여부
 - 폐의약품 수거 관련 안내문 및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
 -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 시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 여부
- o 각 지자체별「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세부사항

1. 실태조사

가. 약국

1) (조사대상)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병원·거주밀집지역·지하철역· 보건소 인근 등 약국 분포가 많은 지역 내 약국을 선정

	(상급)종합병원*	거주밀집지역**	지하철역***	보건소
조사 약국 수	2개	3개	3개	2개

^{*}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병원·약국 찾기'에서 조회한 지역 내 2·3차 종합병원(300병상 이상) 중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곳

^{** &#}x27;19년 행정구역 읍면동 별 5세별 주민등록인구(국가통계포털)/행정구역별 토지면적(경기도교통정보센터)으로 계산 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

^{*** &#}x27;18년 전철/지하철 역별 이용객수(경기도교통정보센터) 가장 많은 역(신분당선 제외)

- 2) (조사방법) 약국에 방문하여 수거함 비치·수거안내판 게시 여부를 확인,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면서 폐의약품 관한 복약지도 여부를 확인하고 폐의약품 수거를 문의
- 3) (조사결과) 120개소 약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.
- □ (수거 여부) 조사대상 120개소 중 110개소(91.7%)가 수거에 응한 반면 10개(8.3%)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함. 수거를 거부한 10개소 중 7개소는 1인이 약국을 운영해 폐의약품 운반이 불가함을 이유로 들었고 3개소는 지자체방침(수원시)에 따라 가정 내 종량제봉투를 통해 폐기하도록 안내함.
- □ (수거함 비치)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는 약국은 120개소 중 17개소(14.2%)에 불과하였고 이 또한 상당수는 시인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.
- □ **(수거안내문 게시)** 수거안내문을 게시한 약국은 120개소 중 6개소(5.0%)로 대부분 약국에서 안내문 게시를 하지 않고 있었음.

[그림 6] 약국 내 수거함 비치·수거안내문 부착 사례



[표 3] 약국 내 수거함 및 수거안내문 위치

폐의약품 수거함 위치			
카운터,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	4		
카운터 밑 정수기 등 비교적 찾기 쉬운 곳	3		
구석진 곳 등 찾기 힘든 곳	9		
약국 외부	1		
총계	17		

폐의약품 수거안내문 부착 위치			
출입문에 부착	3		
수거함 주변에 부착	2		
벽에 부착	1		
총계	6		

- □ (복약지도) 일반의약품 판매 시 불용의약품의 폐기방법에 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은 없었음.
- □ (운반주체・수거주기) 약국으로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주체를 확인한 결과,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▲직접 운반 ▲약사회 ▲제약회사(영업사원)
 ▲사설업체 등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, 이 때문에 수거 주기가 매주・매달・분기별・반년에 한번 등 약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됨.
 - 지자체 일부(수원시・성남시)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100%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 내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가정 내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었음.
 - 인근 지자체와 다른 방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며, 물약류의 의약품은 가정에서 처리 시 변기 등을 통해 버리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.
- 4) (조례·지자체별 비교) 조사결과를 조례제정 여부·지자체 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.
- □ (조례제정 여부) 조례 제정·비제정 지자체간의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 여부·수거함 비치·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【표 4】 폐의약품 관련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약국 조사결과 비교

		수거 여부	수거함 비치	안내문 게시	복약지도
조계 정비	조례 有	55/60 (91.7%)	10/60 (16.7%)	1/60 (1.7%)	0/60 (0%)
조례 여부	조례 無	55/60 (91.7%)	7/60 (11.7%)	5/60 (8.3%)	0/60 (0%)
종합		110/120 (91.7%)	17/120 (14.2%)	6/120 (5.0%)	0/60 (0%)

 □ (지자체별)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약국 내 수거함 비치, 수거안내문 게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양 지자체 모두 설치 비율이 전반적 으로 낮아 관리・감독 및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
【표 5】광역자치단체 별 약국 조사결과 비교

		수거 여부	수거함 비치	안내문 게시	복약지도
광역자치	서울시	56/60 (93.3%)	5/60 (8.3%)	1/60 (1.7%)	0/60 (0%)
단체 별	경기도	54/60 (90.0%)	12/60 (20.0%)	5/60 (8.3%)	0/60 (0%)
종합		110/120 (91.7%)	17/120 (14.2%)	6/120 (5.0%)	0/60 (0%)

나. 보건소

- 1) (조사대상) 각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
- 2) (조사방법) 보건소 로비·민원실 등에 수거함 비치·수거안내판 게시 여부를 확인, 수거함이 없는 경우 '의약과'에 폐의약품 처리를 요청함.
- 3) (조사결과) 12개소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.
- □ (수거 여부) 조사대상 12개소 중 11개소(91.7%)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수거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1개소는 기후(장마철)를 이유로 다음 달 수거 일에 가져올 것을 요청하며 수거를 거부함.
- □ (수거함 비치) 수거함을 비치한 보건소는 12개소 중 4개소(33.3%)였으며 이 중 1개소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사무실 내에 비치해 방문자가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음.
- □ **(수거안내문 게시)** 폐의약품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한 보건소는 12개소 중 1개소(8.3%)에 불과하였음.

【표 6】보건소 내 수거함 및 수거안내문 위치

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	위치
로비 및 민원실	3
사무실(의약과)	1
총계	4

폐의약품 수거 안내문 부칙	낚 위치
사무실(의약과) 벽에 부착	1
총계	1

【그림 7】 보건소 내 수거함 비치·수거안내문 부착 사례



[표 7] 보건소 내 수거함 및 수거안내문 위치

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	위치
로비 및 민원실	3
사무실(의약과)	1
총계	4

폐의약품 수거 안내문 부칙	위치
사무실(의약과) 벽에 부착	1
총계	1

- 4) (조례·지자체별 비교) 보건소 조사결과를 조례제정 여부·지자체 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.
- □ (조례제정 여부) 조례 제정·비제정 지자체간의 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 여부 ·수거함 비치·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[표 8] 조례제정 여부에 따른 보건소 조사결과 비교

		수거 여부	수거함 비치	안내문 게시
조게 어ㅂ	조례 有	6/6 (100%)	1/6 (16.7%)	1/6 (16.7%)
조례 여부	조례 無	5/6 (83.3%)	3/6 (50.0%)	0/6 (0%)
종합		11/12 (91.7%)	4/12 (33.3%)	1/12 (8.3%)

□ (지자체 별) 경기도는 4개소(66.7%)가 수거함을 비치한 반면 서울시는 한 곳도 비치하지 않았고, 수거안내문 게시는 양 지자체 모두 설치 비율이 낮아 관리・감독 및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
[표 9] 광역자치단체 별 보건소 조사결과 비교

		수거 여부	수거함 비치	안내문 게시
광역자치	서울시	5/6 (83.3%)	0/6 (8.3%)	1/6 (16.7%)
단체 별	경기도	6/6 (100%)	4/6 (66.7%)	0/6 (0%)
종합		11/12 (91.7%)	4/12 (33.3%)	1/12 (8.3%)

2. 문헌조사

가.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- 1) (조사대상)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「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(83개)
- 2) (조사방법) 각 조례 내 수거 주기, 수거함 설치, 수거안내문 게시, 약사 복약지도, 운반처리 등 관리주체에 관한 세부사항의 명시 여부를 확인함.
- 3) (조사결과) 83개 조례를 조사한 결과,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표준 조례안 마련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함.
- □ (조례 제정)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곳(기초자치단체 226곳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) 중 83곳(36.4%)에서 조례를 마련함.(20.11.26.기준)
- □ (수거 주기) 「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」에서 '월 1회 이상'을 수거 주기로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83개 중 40개(48.2%) 조례만 수거 주기를 '월 1회 이상'으로 정하고 있었고, 13개(15.7%) 조례는 '격월~연 2회', 23개(27.7%) 조례는 '정기적·수시로', 나머지 7개(8.4%) 조례에는 수거주 기가 누락되어 있었음.
- □ (수거함 설치) 83개 중 70개(84.3%) 조례에서 약국·보건소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□ (수거안내문 게시) 83개 중 22개(26.5%) 조례에서는 시·구·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수거안내문 및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음.

- □ (복약지도) 83개 중 69개(83.1%) 조례에서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및 보건 소장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해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정하고 있음.
- □ (관리 주체) 83개 중 30개(36.1%) 조례에만 수집·운반·처리 등에 대한 관리부서 및 업체를 명시하고 있었음.

1. 약국·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안내문 부착 유도

가. 문제점

- ☐ 「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」에 따르면 **폐의약품은 약국·보건소를** 통해 배출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하도록 하고 있음.
 - 그러나 금번조사결과, 조사대상 약국 120개소 중 **폐의약품 수거함이** 비치된 곳은 17개소(14.2%), 안내판을 게시한 곳은 6개소(5.0%)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.
- 또한 보건소 12개소 중에서도 4개소(33.3%)만이 **수거함을 비치**하고 있었고 안내판을 게시한 곳은 1개소(8.3%)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을 보건소를 통해 배출하는 것도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.
- □ 아울러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가 **불용의약품의 폐기방법에 대해**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도 전무해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.
 -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에서 **폐의약품 수거함** 안내판을 제작하여 약국 · 보건소에 배포 · 비치하도록 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관련 홍보를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나. 개선방안

- □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에서 폐의약품 수거함・안내판을 제작하여 약국 • 보건소에 배포 • 비치
- □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교육·홍보강화 방안 마련

2.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·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·관리 보완

기	기	ŀ.	문제점
---	---	----	-----

- □ 현재 폐의약품 수거·처리는 **지자체 소관**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**'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'를 통해 기준을 마련**해야 함.
 - 그러나 전국 지자체 228개 중 83개(36.4%)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며, 조례가 제정되어있더라도 수거주기나 운반・보관・소각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거함설치・약사 복약지도・안내표시판 게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표준 조례안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함.
 - 금번 조사결과 조례 제정/미제정 지자체간에 수거함 설치·안내 표시판 게시 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례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·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함.
- □「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」에서 **지자체는 생활계 유해폐기물** 관리실적을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그러나 실적 보고 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에 대한 분리수거 여부・수거방법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및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실적이 보고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나. 개선방안

□「불용의약품의	관리에	관한	조례」	표준안	마련	및	조례제정	지자체
확대방안 마련								

□ 폐의약품 개별 실적보고 등 수거·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·관리 보완

Ⅴ 조치계획

1. 대정부 건의 (지방자치단체, 환경부, 보건복지부)

지방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에서 폐의약품 수거함·안내판을 제작하여 약국·보건소에 배포·비치
「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표준안 마련 및 조례제정 지자체 확대방안 마련
폐의약품 개별 실적보고 등 수거·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·관리 보완

2. 소비자 정보 제공

□ 언론홍보 및 소비자시대 등 홈페이지 게재

☐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교육·홍보강화 방안 마련

[붙임 1]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

○○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(안)

○○도 ○○시 (○○과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○○시 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불용의약품"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.
- 2. "페의약품"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·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.
- 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○○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·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·수집·운반 및 처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,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,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그 밖에 폐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시민의 책무)** ① 시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 -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 ○○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등에서 복약 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,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 기에 분리·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수집)**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,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역할을 수행한다.
 - ②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·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.
- 제6조(불용의약품 등의 운반·처리)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·보건소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매월 ○번째 ○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.
 - 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·조정 역할을 하고, 폐기물관리부서(○○ 과)에서는 약국·보건소 등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·처리 역할을 한다.
- **제7조(포상)**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페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